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9 선고 2021가단522383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인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1. 9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7. 1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37,826,5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7,826,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신종열

별지